

외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규칙 입안 예고

외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.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2. 7.

외 북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장

1. 제명

외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일부개정안

2. 개정사유

- 가. 유아교육법 제10조에 의거 제정.시행되고 있는 「외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규칙」에 대하여 현재 유아교육법과 유치원 운영 제도가 급변하고 있어 본원의 현행 규칙내용을 적용하여 운영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규칙 개정이 필요함.
- 나. 유아교육법 제8조에 의거 제정.시행되고 있는 「외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규칙」에 대하여 본원의 실정에 맞게 관련 조항을 부분 또는 전면 개정하여 보다 명확하고 세분화된 규칙을 근거로 유치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- 다.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-775(2023. 1. 17.)호 유치원규칙 기재사항 정비에 따라서 유치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제2장 제4조(교육연한), 제6조(휴업일),
 - 제3장 제8조(월아정원),
 - 제4장 제9조(교육과정 및 교육내용),
 - 제5장 제10조(교육일수), 제11조(교육시간), 제12조(수업운영방법), 제13조(수업장학), 제15조(월아평가),
 - 제6장 제19조(퇴학), 제9장 제24조(유치원규칙 개정절차)
- ※ 별첨 외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안 전문 1부.

4. 의견제출

- 가. 이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북초등학교장(참조 유치원교사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전화 531-7521, 팩스 532-6162)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.반 여부와 그 이유)
 - 2)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나. 입안예고안의 학교규칙 개정안 전문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외북초등학교 홈페이지 (<http://www.oebuk.es.kr>)에 게시되어 있음.